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0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3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8. 8.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2. 10. 한 52,297,650원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08

가. 원고는 2008. 11. 12. B로부터 [redacted]시 [redacted]구 C 임야 25,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위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자(신고자) 원고, 대리인 법무사 D으로 하여 과세표준액 2,377,166,000원, 취득세 47,543,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54,330원 합계 52,297,65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법무사 D은 2008. 11. 12. [redacted]등기소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증여자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위임장, 증여계약서 등이 위조되었음이 드러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 및 가산세 합계 53,238,990원을 부과 및 징수고지하였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위 처분 중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중 원고가 다투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합계 52,297,650원에 관한 징수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1. 7. 20.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체납세액 및 가산금 합계 72,723,950원을 결손처분하였다가, 2017. 8. 24.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였다.

마. 한편 [redacted]등기소는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공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문서인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각 위조한 다음 위조된 위 각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문서 및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08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미수 등의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32636호).

바. 원고는 2017. 8. 25.경 피고로부터 압류 통지를 수령한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9. 22. [redacted]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12. 13. 각하되었고, 원고는 2017. 1. 8.경 그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8. 3.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법무사 D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위임하였을 뿐이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B 명의의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등기공무원에게 발각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원인이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성격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08

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참조), 그 뒤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이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관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청구취지를 2009. 2. 10.자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제소기간 도과 여부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등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08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42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를 B로부터 증여받을 의사가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D에게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고서에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그 위임자란에 원고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는 원고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08

판사 추진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08

별지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08

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끝.